

2015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보수총액신고의 중요성

-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2016년 3월 15일(화)

대상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벌목업은 제외
('16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 대상임)

신고내용

2015년도에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금(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 반영

● 전자신고 (모든 사업장)

- 인터넷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
토털서비스 미가입 사업장도 신고서 우측 상단에 적힌 "임시아이디"를 활용하여 신고가능
- CD 접수 : 공단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 서면신고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만 신고 가능)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우리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근로복지공단 전자팩스(신고서 우측상단)를 이용하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여부를 확인가능

※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 또는 충당할 보험료는 '16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16년 5월 10일)에 반영.
만약, 정산보험료 추가 부과액이 4월 월별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보험료에 각각 합산고지 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팩스 접수시 바코드 오류방지를 위한 당부사항

- 팩스 발송 표시 없이 작성한 **신고서식만**
- 가급적 **사업장관리번호별**
- 신고서식에 **바코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 **구분하여 발송**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